성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.

3. 추진배경

○ 영·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어떤 연령층보다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

○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관리,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제공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가 필요

○ 영·유아기는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출발임.

4. 추진일정

○ 위탁기관 공개 모집 : 11월중

○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: 11월중

○ 위탁업체선정 및 협약체결 : 11월중

○ 성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: 11월중

5. 법적근거

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

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의2

○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(안)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,

○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운영비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(안) 대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따라서 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어린이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, 교육 등으로 어린이 집단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